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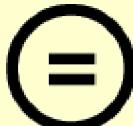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사학석사 학위논문

조선 후기 족보의 여성 정보 등재
추이와 그 의미

- 安東權氏族譜(1476~1907)를 중심으로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강나은

조선 후기 족보의 여성 정보 등재

추이와 그 의미

- 安東權氏族譜(1476~1907)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건 태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강 나 은

강나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2월

위 원 장 김 경 숙



부위원장 김 건 태



위 원 김 경 숙



【국문초록】

조선 후기 족보의 여성 정보 등재 추이와 그 의미

- 安東權氏族譜(1476~1907)를 중심으로 -

강나은

본 연구는 조선 후기 족보의 처 정보 기재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연구이다. 조선 전기부터 간행된 족보는 조선 후기에 더 활발히 간행되면서 구성상 변화를 보였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외손 가계 기록에는 제한이 생기는 반면, 처 정보를 기재하는 인물들이 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족보의 처 정보 기재 인물의 증가 추세, 처 정보 기재 내용을 분석해 처 정보 기재가 가지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는 가문별 족보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전에는 족보에 입록될 수 없었던 인물들이 점차 족보에 포함되는 시기였다. 여기에는 동족 집단의 인물을 포함한다는 이유가 뒷받침되었다. 안동권씨가 간행한 족보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다. 안동권씨는 1476년 처음으로 족보를 간행한 이후 1907년까지 6차례 더 大同譜를 간행하였다. 이 가운데 17세기 중반 이후 간행본부터 계통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안동권씨로 족보에 입록되고자 하는 인물이 입록되는 別譜가 만들어진 것이다.

안동권씨족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 넓은 범위의 인물들을 포함했지만 동시에 족보 간행을 거듭하며 족보 입록이 번복되거나 뒤늦게 족보에 입록되는 인물들이 존재했다. 여전히 사회적으로 한미한 지위거나 가문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안정적인 족보 입록을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었다.

조선 전기에 비하여 조선 후기는 더 많은 성관이 족보 간행에 참여했

고 족보 입록 인물의 범위도 더 넓어졌다. 동시에 외손 가계의 입록에는 제한이 생겼다. 족보가 동일 성관의 인물을 더 많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 갔던 것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족보 입록을 통한 사회적 지위 보장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에 따라 족보에 입록되는 인물들은 점차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처 정보 또한 그 가운데 제공되는 정보였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처 정보를 기재하는 인물의 비율은 점차 높아졌다. 처 정보는 당대의 혼인 관계 구현만을 위한 정보만이 아닌 한 인물의 계통과 관련한 정보였다. 처 정보 기재 초기는 이전 족보에 이미 입록되었던 인물들의 처 정보 제공이 더 중요했고 이후로도 이입 인물의 처 정보는 지속적으로 추가되었다.

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인물의 대다수가 처의 가계 정보에 해당하는 본관과 아버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었다. 족보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입증하려는 인물들에게 처의 가계가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 필요한 정보가 된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까지 외가와 처가가 개인의 사회적인 지위 및 이권 획득에서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족보, 조선 후기, 처 정보, 외손, 사회적 지위, 가계

학 번 : 2018-28670

목 차

머리말	1
一 . 족보 입록 인물의 성격과 외손 기재 범위의 변화	7
1. 족보 간행 현황과 입록 인물	7
2. 외손 기재 범위의 변화와 족보 자료의 성격	15
二 . 처 정보 기재율의 증가와 기재 내용	21
1. 처 정보 기재 인원의 증가 추세	21
2. 처 정보 기재 내용과 처 정보 제공의 목적	27
맺음말	38
참고문헌	40
Abstract	45

표 목 차

[표 1] 안동권씨족보 간행년도, 표제와 권수	9
[표 2] 족보 入錄 부계 인물의 유지 추이	12
[표 3] 각 족보별 처 정보 기재·미기재 인원수와 그 비율	21
[표 4] 족보별 이입 인물과 신입 인물의 처 정보 현황 분석	23
[표 5] 족보에서 처음 入錄된 인물이 처음 처 정보를 획득하는 시 기	24
[표 6] 각 족보별 처 정보 기재 방식	27
[표 7] 처 정보 기재 정보 현황	32
[표 8] 성씨, 본관, 아버지 정보 현황	35

머리말

조선 후기 사회를 둘러싼 보편적인 이해 중 하나는 친족 질서가 조선 전기와는 달랐다는 것이었다. 이를 다룬 연구들은 조선 전기의 양측적인 친족 제도가 조선 후기에 부계친 위주의 친족 질서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친족 질서의 재편은 친족 관계에 기반하여 형성된 관습 혹은 제도의 변화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친족 혹은 가족을 다룬 연구들은 상속, 혼인제도의 변화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친족 질서 변동을 설명해왔다.¹⁾

이들 연구는 친족 질서 변동원인을 ‘유교화’²⁾로 지목했다. 여기서 유교의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주자가례 질서의 정착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었다. 주자가례 질서는 예법서 《朱子家禮》에 기반한 예제 실천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 질서이다. 따라서 주자가례 질서는 예제의 실천 자체를 비롯한 예제 실천으로부터 비롯된 관념의 변화, 예제 실천을 위한 사회적 토대 모두가 포함되는 개념이다. 예제의 기준이 되었던 《朱子家禮》는 宗法에 기반한 예제 실현을 이상으로 삼고 있었다. 여기서 宗法은 적장자 중심의 가계 계승과 제사 상속을 골자로 하고 있기에 부계 친족 위주의 친족 질서를 전제로 하였다.³⁾ 조선 후기 상속과 혼인 제도 상

-
- 1) 崔在錫,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김경란, 2000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376-402쪽; 최홍기, 2004 〈친족제도의 유교화 과정〉,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19-91쪽; 이순구, 2005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10, 119-142쪽;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역, 2003 《한국의 유교화 과정: 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너머북스. (Deuchler, Martina.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ss. :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를 번역)
 - 2) 유교화(The Confucian Transformation)는 마르티나 도이힐러가 그의 연구 《한국의 유교화 과정: 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유교 이념에 따른 예제 실천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변화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 3) 김언순, 2009 〈18세기 종법사회 형성과 사대부의 가정교화: 가훈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3, 125쪽.

의 특징들은 친족 질서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었고 친족 질서의 변동은 주자가례 질서의 정착결과라는 해석으로 귀결되었다. 4)

조선 시대 혼인 관습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자가례 질서의 정착을 주장하면서도 주자가례식 혼인 형태인 親迎의 정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성이 남성의 집으로 가 혼인하는 親迎은 조선 전기부터 이상적으로 간주되었던 혼인 형태였다. 그럼에도 조선 전기는 男歸女家婚 형태의 혼인이 지배적이었고 이 때문에 친영 정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5) 그런데 이 조선 전기의 婚俗이 조선 후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조선 후기 사회의 주자가례식 예법 시행 지향에도 불구하고 친영은 조선 사회에서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연구자들은 친영이 조선 전기 혼속의 절충적 형태인 半親迎으로 정착했다고 분석해왔다. 이에 따르면 주자가례는 현실과 일정한 타협을 통해 정착한 것⁶⁾이 된다.

조선 사회의 주자가례 정착을 다룬 연구들은 《주자가례》에 기반한 예제 실천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半親迎의 경우와 같이 변용이 있었을지라도 정착 자체는 성공했다고 평가해왔다.⁷⁾ 그러나 애초에 변용을 통해서 정착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것을 성공적 정착이라 평가할 수 있을지

4) 崔在錫, 1972 〈朝鮮時代의 相續制에 關한 研究 - 分財記의 分析에 依한 接近〉, 《역사학보》 53·54, 99-150쪽; 전경목, 2003 〈分財記를 通해서 본 分財와 奉祀慣行의 变천〉, 《古文書研究》 22, 249-270쪽; 권내현, 2018 〈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종법과 경제력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70, 283-315쪽; 이순구, 1998 〈종법제도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한국사》 31, 207-231쪽; 김경미, 2006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친영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5, 261-292쪽; 마크 피터슨; 김혜정 역, 2000 《儒敎社會의 創出》, 일조각.

5) 장병인, 1997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6) 마르티나 도이힐러, 김우영·문옥표 역, 2018 《조상의 눈 아래에서》, 너머북스.

7) 김남이, 2006 〈17세기 사대부의 『주자가례』에 대한 인식과 일상에서의 예 실천〉, 《한국학》 29(2), 99-124쪽; 마르티나 도이힐러, 김우영·문옥표 역, 2018 《조상의 눈 아래에서》, 너머북스; 이문주, 2010 〈『주자가례』의 조선 시행과정과 가례주석서에 대한 연구〉, 《유교문화연구》 1(16), 37-62쪽; 이숙인, 2005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 문화〉, 《한국학》 29(2); 김소은, 2007 〈18세기 嶺南 土族의 일상과 생활의례(I)〉, 《史學研究》 88, 185-228쪽.

의문이 생긴다. 실제로 최근 혼속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주자가례에 근거한 혼인 형태는 어떤 형태로든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⁸⁾ 더하여 18세기까지도 사대부의 거주와 혼인에서 조선 전기의 풍습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⁹⁾ 주자가례 정착에 힘써왔던 것으로 연구된 사대부들조차 《주자가례》보다는 현실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였다는 연구도 존재한다.¹⁰⁾ 상속을 다룬 연구에서도 장자 위주의 상속 관행이나 장자 단독 봉사가 18세기 말~ 19세기까지도 정착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¹¹⁾ 이와 같다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주자가례 정착을 위시한 유교화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다시 말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유교적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교화’라는 귀결점에서 벗어나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조선 후기 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주자가례의 정착은 여성의 지위 하락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것으로 연구되어왔다.¹²⁾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가 유교적 이상과 이와 다른 현실이 공존하는 사회였다면 여성의 지위 하락 문제도 재해석의 여지가 생겨난다. 더하여 지위의 변동 혹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설명하는 시도는 언제나 비교 대상을 설정함으로써 성립 가능하다. 애초에 지위는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복합적 변수가 작동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위 비교는 절대적일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
- 8) 김연수, 2018 『전통혼례 제도사와 시집살이 문화의 탄생』, 민속원; 장병인, 2005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 반친영(半親迎)의 실체와 그 수용여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8, 259-293쪽.
- 9) 정진영, 2019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본 18세기 혼인풍속〉, 《고문서연구》 54, 233-264쪽.
- 10) 김건태, 2006 〈19세기 단성지역의 결혼관행〉, 《고문서연구》 28, 235-263쪽; 김정운, 2015 〈조선 후기 사족의 혼인과 이주〉, 《한국사학보》 60, 277-317쪽.
- 11) 문숙자, 2019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국학연구》 39, 117-149쪽.
- 12) 김윤정, 2009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14, 453-487쪽; 김진명, 1994 〈가부장담론과 여성억압-내훈서 및 의례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33, 61-94쪽; 김경미, 2006 앞 논문; 김언순, 2009 앞 논문.

여성의 지위 고하를 밝히기보다는 족보에 여성 정보가 기재되는 방식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족보가 여성과 여성 정보를 둘러싼 사회적 배경을 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자료라 판단했다. 족보는 종법 의식 형성의 결과이자 유교적 이념을 담고 있는 자료로 이해되기도 했지만¹³⁾, 동시에 당시 친족 관계 혹은 이상적 친족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¹⁴⁾ 특히나 한국의 족보는 친족 기재 방식에서 다른 동아시아 족보와 다른 특징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 시대 간행된 족보는 류큐의 족보와는 달리 방계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중국과는 달리 혼인 관계의 기재가 중시되고 있었다. 동아시아 족보를 비교한 연구에서는 족보 자료가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은 사회적 요소에 그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신분제가 각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족보에서 부각되는 정보를 다르게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¹⁵⁾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족보에 기입되는 정보가 사회적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전제 아래 족보에 기입되는 변화가 족보 간행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친족 제도에 영향을 받는 상속과 혼인의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존재 양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친족 제도 연구는 여성사 연구 분야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다.¹⁶⁾ 선행 연구들이 조선 시대 여성을 친족 관계 속에서 해석해왔던 만큼¹⁷⁾ 가계 기록 속 여성 정보가 기재

13) 권오영, 2010 〈조선시대의 족보(族譜)기록에 보이는 유교이념(儒敎理念)의 양상과 의미〉, 《한국계보연구》1, 219-243쪽.

14) 권기석, 2011 〈한국의 族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44, 67-119쪽.

15) 宮島博士, 2012 〈동아시아세계 속의 한국 족보〉, 《大東文化研究》77, 16-25쪽.

16) 이는 초기 여성사 연구가 가족제도사 혹은 친족 제도사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2014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와 현실》 91, 317-338쪽.)

17) 이순구, 2015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 - 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23, 37-66쪽; 박경, 2011 〈16세기 유교적 친족질서 정착 과정에서의 총부권 논의〉, 《朝鮮時代史學報》59, 71-104쪽. 김경미, 2012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한국여성학》28(4), 85-117쪽; 하여주, 2017 〈17세기 조선 사회의 결혼형태 변화에 따른 젠더 계층화 시도와 갈등 양상〉, 《여성학연구》27(3), 71-103쪽; 한효정 2010 〈16세기

되고 있는 현상과 그 현상의 의미를 분석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족보가 전기와 후기에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해왔다.¹⁸⁾ 족보를 연구 주제로 한 연구들은 조선 전기 内外孫을 모두 통합한 綜合譜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족보가 조선 후기에 同姓親을 중심으로 그 후손을 기록한 同姓譜로 그 성격이 바뀐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해왔다.¹⁹⁾ 족보 자료에서 외손이나 사위 기재 현상을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는 있어왔지만 치 혹은 며느리에 해당하는 여성 정보를 해석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족보의 여성 정보는 초기의 족보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연구는 초기 족보가 조선 후기 족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15~16세기 족보에는 외손 기재 범위에 제한이 없고 여성의 재가 현황도 기재되어 있다는 점, 출생 순서에 따른 자녀 기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자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후기와는 다른 초기 족보의 특징으로 연구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교화가 조선 전기와 후기 족보의 변화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르면 유교화의 영향으로 同姓親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異姓親은 점차 족보에서 배제되었다.²⁰⁾ 족보의 여성 기재 정보 기재 현황의 변화는 조선 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하락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간주되기도 하였다.²¹⁾

그런데 이 연구들에서는 여성 기재 방식의 대략적 변화상을 추적했음에도 조선 후기 족보에서는 아내 정보가 기재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실제로 다른 연구를 통해 異姓親의 비율이 조선 전기와 후기

한 양반가 부인의 재산 축적과 소유의식〉, 《古文書研究》36, 97-120쪽.

18) 선구적인 연구로는 崔在錫의 연구가 있다. 崔在錫, 1979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81, 37 - 79쪽.

19) 권기석, 2007 〈15~17세기 族譜의 編制 방식과 성격〉, 《奎章閣》30, 53 - 93쪽; 2010 〈15~17세기 族譜 간행과 참여계층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수건, 1999 〈족보와 양반의식〉, 《한국사시민강좌》24, 20-49쪽; 이건천, 2010 〈조선시대 족보에 대한 일 고찰〉, 《강원문화연구》29, 59-83쪽.

20) 이남희 2011 〈조선 사회의 儒教化와 여성의 위상〉,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48, 135-168쪽; 이남희, 2011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여성의 재가(再嫁)문제〉, 《조선시대사학보》57, 39-72쪽.

21) 에드워드 와그너, 2007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모두 높았음이 밝혀지고 있다.²²⁾ 이를 연구는 조선 전기와 후기 족보가 공통적으로 ‘혼인 네트워크’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여성은 혼인 네트워크의 매개가 되는 존재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유교 이념의 강화로 인한 여성 지위의 하락과 異姓親의 배제’ 주장만으로는 족보의 여성 정보를 해석할 수 없다.

최근 족보의 여성 정보 기재 현상의 추이를 분석한 연구는 전기와 후기 족보 족보에서 각각 ‘딸’과 ‘배우자(며느리)’의 형태로 여성 정보가 제공되어 왔음을 밝혔다. 다만 이 연구는 족보의 여성 정보 기재가 구현하는 네트워크가 ‘혈연 네트워크’에서 ‘혼인 네트워크’로 변화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며느리’ 정보의 기입은 여성의 夫家로의 귀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 후기 부계적 요소의 강화라는 경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²³⁾

그런데 혈연과 혼인 네트워크가 구분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이 남는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족보 기재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외손 기재 범위가 넓은 조선 전기도 2대로 한정된 조선 후기도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외손도 궁극적으로는 부계 여성의 자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상적으로 혈연 네트워크에서 혼인 네트워크로의 전환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더하여 혈연은 친족 집단 구성 원리이다. 이에 반해 혼인은 친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혈연과 혼인은 중심점이 옮겨갈 수 있는 대등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처 정보 기재는 조선 후기 족보에서 관찰되는 현상인만큼 이에 대한 해석이 조선 후기 족보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17세기 부계 친족 질서의 변환이라는 대명제에 맞추어 이를 해석하였고 처 정보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처 정보 기재를 조선 후기의 특성으로 간주한 기존 연구사의 이해 위에서 조선 후기 처 정보 기재의 원인을 족보로부터 찾으려는 시

22) 손병규, 2010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 《大東文化研究》71, 7-41쪽; 미야지마 히로시, 2012 앞 논문, 7-28쪽.

23) 權奇甌, 2019 〈조선시대 족보의 女性 등재 방식 변화 -여성의 夫家 귀속과 다원적 계보의 식의 축소-〉, 《조선시대사학보》90, 41-95쪽.

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집단과 집단 단위의 결속 원리로 해석되어왔던 족보의 여성 기재 현상을 여성 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의 입장을 조명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본 연구 과정은 ‘족보의 여성 정보가 어떠한 사회적 수요 속에서 변화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一장은 족보 인물 *入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절에서는 전반적인 족보 간행의 추이와 입록 인물의 유지 및 탈락 정황을 살펴보았다. 2절은 규정상 변화가 있었던 외손 기재 범위의 축소 현상을 여성의 지위 하락이라는 틀로 서술하기 보다는 조선 후기 전체의 족보 간행 현상과 연관지어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二장에서는 처 정보 기재 추이와 내용을 살펴 처 정보가 제공하고자 했던 정보의 내용을 살핀다. 1절은 처 정보 기재가 점차 늘어나는 현상과 처 정보 기재가 이루어지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족보 처 정보 기재의 의미를 유추하였다. 2절은 처 정보 기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폈다. 족보의 범례로부터 그 의미를 유추하거나 다른 자료와 연결 지어 해당 정보의 의미를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 증가한 처 정보 기재 현상의 의미를 추정해 보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았다.

一. 족보 입록 인물의 성격과 외손 기재 범위의 변화

1. 족보 간행 현황과 입록 인물

족보는 가계 기록의 한 종류로 한 인물의 후손, 그 가운데에서도 부계 후손을 중심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조선 이전부터 가계 기록은 여러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한 선조로부터 그 자손을 망라하는 형태의 족보는 조선 전기부터 시작되었다. 15-16세기 편찬된 족보 가운데 《成化譜》은 현

전하는 족보 중 最古의 족보로 安東權氏 시조 權幸의 후손을 망라하고 있다.

安東權氏族譜는 1476년 간행본 《성화보》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 시대를 연구 시기로 설정하였으므로 1910년 이전 간행된 족보까지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족보는 한 인물의 후손을 포함하는 가계 기록이므로 수록 범위와 편찬 주체가 다양하다. 한 支派에 해당하는 인물들만을 포함하거나 해당 성관에 속하는 인물 모두를 포함하여 간행되기도 한다. 성관 단위, 혹은 개인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자료이므로 통일된 간행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일례로 1781년에 간행된 《安東權氏世譜》는 1734년 간행된 《安東權氏世譜》(이하 《갑인보》로 통칭함)과 1794년 간행된 《安東權氏世譜》(이하 《후갑인보》로 통칭함)와 표제는 일치하지만 그 권수는 1 권 밖에 되지 않는다. 1897년 간행된 《安東權氏世譜》는 안동권씨 15개파 중 하나인 檢校公派만을 다룬 가계기록이다. 이처럼 다양한 범위와 분량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분석대상이 되는 족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안동권씨 성관을 단위로 한 연구인만큼 족보를 분석하기 위해 派에 따른 제한이 없이 안동권씨에 속하는 인물들을 망라하는 大同譜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大同譜는 표제로는 大同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포함하는 派도 족보에 따라 달라지므로 大同譜를 판단하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문과 발문을 참고했다. 안동권씨족보는 새로 간행된 대동보에 이전 대동보의 서문과 발문을 소개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되는 大同譜는 2018년 간행된 《안동권씨세보》에서 서문 혹은 발문을 실은 족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족보들은 거듭되는 간행 속에서 참고 대상이 되거나 간행의 기준이 된 舊譜로 존재해온 족보들이다.

안동권씨는 《成化譜》를 시작으로 1907년 《丁未譜》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대동보를 간행하였다. 각 족보의 간행 시기와 권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안동권씨족보는 《乙巳譜》²⁴⁾를 제외한 6차례 간행본이 남아

있다. 간행 횟수를 보면 《성화보》를 1476년에 간행한 이후 17세기에 2번, 18세기에 3번, 20세기에 1번 간행하였다. 안동권씨족보는 전기와 후기 모두 간행되었으며 특히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권씨족보는 最古의 족보일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된 족보로, 조선 전기와 후기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표 1> 안동권씨족보 간행년도, 표제와 권수

족보	간행년도	권수(卷)	別譜
成化譜	1476	3	없음
乙巳譜	1605	16(추정)	알 수 없음
甲午譜	1654	1	권말
辛巳譜	1701	13	2권
甲寅譜	1734	17	3권
後甲寅譜	1794	34	5권
丁未譜	1907	49	없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모든 동성동본의 인물을 망라하는 大同譜이지만 분석 대상이 되는 간행본들이 모든 支派를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 안동권씨는 10세조의 인물들을 파조로 둔 총 15개의 파로 구성되어 있다. 15개의 파는 조선 전기 족보 편찬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조선 후기의 산물로 초기 족보에서는 派名을 찾을 수가 없다. 성관 별로 구체적인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나 파가 본격적으로 분리되어 派名을 간직한 형태로 족보에 기재되는 것은 18세기부터 시작된 현상으로 보인다.²⁵⁾ 안동

24) 《을사보》는 현전하지 않는 족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석에서는 제외한다. 단 <표 1>은 포함시켜 작성하였다. 이는 <표 1>은 전반적인 족보 간행 상황을 살피려는 의도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을사보》를 포함시켜 작성하여 간행 시기와 권수의 변동을 살피기 위함이다. 《을사보》권수 추정의 근거는 《갑오보》의 凡例이다. 舊譜板本藏在本府而盡失於壬辰之亂其印藏者亦未能保新譜大本俱錄內外派凡十六帙考者病其浩洋故只抽子姓彙成一卷而庶派則諸譜皆闕只存數譜卒難盡收今姑略此(밑줄은 필자 강조)

25) 崔在錫, 1983, 위의 책, 713-714쪽.

권씨족보에서도 派名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34년 간행된 《갑인보》부터로 다른 성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 족보에는 인물별 후손을 범주화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派名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로 족보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갑인보》에 기재된 파명을 토대로 이전 족보 인물의 派를 확정지었다.

《갑인보》에 기재된 파명을 토대로 《성화보》의 인물의 파를 분류해보아도 《성화보》에 기재된 파는 權守平의 후손 樞密公派, 權守洪의 후손 僕射公派, 權英正의 후손 別將公派로 한정된다. 《성화보》 이후 족보도 모든 支派를 포함하지 못했다. 세 파 이외의 다른 파의 인물들을 포함하여 간행되었지만 支派에 따라 족보 入錄 시기를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⁶⁾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성화보》를 기준으로 樞密公派, 僕射公派, 别將公派 인물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선 시기 족보 간행에서 특징적인 현상은 17세기 후반에 조선 사회 전반의 족보 간행 건수가 급증한다는 것이다. 19세기까지 간행된 족보의 18%만이 17세기 이전에 간행된 것이고 80%이상이 17세기 후반 이후에 간행되었다.²⁷⁾ 안동권씨족보도 17세기 전반 간행본인 《을사보》는 전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간행본은 《성화보》를 제외하면 모두 17세기 후반 이후 간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족보 간행의 변화는 간행 건수 증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족보 구성에서도 변화상이 관찰된다. 17세기 중반 간행된 《갑오보》부터 만들어진 别譜의 존재가 그것이다. 《갑오보》의 别譜는 권질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附記된 형태였다. 1701년 간행된 《신사보》부터 别譜는 별도의 책으로 만들어졌으며 1907년 《정미보》간행까지 따로 권을 나누어 간행하였다. 이때에 别譜는 계통이 명확하지 않아 原譜에는 入錄될 수 없는 인물들을 수록하는 족보였다. 17세기 중반부터 계통이 명확하지 않은 인물들이 同姓親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다.

26) 권기석, 2010b <조선시대 족보(族譜)의 入錄계층(入錄階層) 확대와 한계 -> 《조선시대사학보》 55, 144쪽.

27) 노명호, 1999 <한국사 연구와 족보>, 《한국사 시민강좌》 24, 93-95쪽.

족보 간행에 있어 17세기는 入錄 계층과 관련한 변화가 관찰되는 시기로 주목되었다. 15-16세기 중앙의 명문 거족만을 수록했던 족보가 이 시기 지방의 한미한 양반과 庶孽, 吏派까지 포함되었다. 内外孫 모두를 망라하던 이전의 족보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의 인물들이 同姓親을 위주로 한 동족의식의 강화와 결속이라는 목적 속에서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⁸⁾ 그러나 족보에 포함되는 인물들이 모두 동일한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別譜와 原譜의 구분이 바로 이를 보여준다. 동족 집단의 일원이 되었으나 그 계통이 의심되는 인물을 별도로 수록하였던 것이다. 각 족보의 범례에는 別譜와 原譜 사이 移錄에는 계통의 고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别譜와 原譜의 구분에는 계통의 고증이라는 명목상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었던 듯하다. 실제로 别譜 入錄은 계통 고증 여부가 아닌 사회적 위계에 따라 결정되었다.²⁹⁾ 17세기 후반 족보는 표면적으로 더 많은 인물을 동족 집단의 범주 안에 포함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위계에 따른 경계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계 남성 자손의 유지추이를 분석한 <표 2>는 족보 간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同姓親 모두를 포함하는 과정이 아님을 보여준다. 족보는 한 성관의 부계 남성 자손을 중심으로 한 가계기록이다. 조선 후기 수록 범위가 축소된 외손과는 달리 남성 자손 수록 범위에는 명시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계 남성 자손은 그렇지 않은 자손에 비하여 탈락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계 인물 가운데에서도 남성 인물의 유지와 탈락을 분석하였다.

28) 권기석, 2010b 앞 논문.

29) 權奇奭, 2020 〈조선후기 족보 入錄의 정치·사회적 의미 -족보가 갖는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의 兩面性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2, 206-214쪽.

<표 2> 족보 入錄 부계 인물의 유지 추이 (단위:명)

	성화보	갑오보	신사보	갑인보	후갑인보	정미보
성화보 (1467)	540	503 (93.1)	508 (94.1)	490 (90.7)	497 (92.0)	493 (91.3)
갑오보 (1654)		2,822	2,652 (94.0)	2,661 (94.3)	2,693 (95.4)	2,646 (93.8)
신사보 (1701)			6,979	6,293 (90.2)	6,369 (91.3)	6,245 (89.5)
갑인보 (1734)				10,472	10,207 (97.5)	9,787 (93.5)
후갑인보 (1794)					21,937	17,816 (81.2)
정미보 (1907)						48,577

*()안은 유지율

<표 2>는 세로축 족보에서 入錄된 인물들이 이후 가로축 족보에서 유지되는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성화보》 입록 부계남성인물 가운데 503명이 《갑오보》에 남았고 《신사보》에는 탈락된 인물 가운데 5명이 다시 기재되어 508명이 남았다. 《갑인보》에서는 490명이 《후갑인보》는 7명이 다시 기재되어 497명이 《정미보》에는 493명이 남았다. 족보 입록 인물들은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탈락하지 않고 탈락과 입록을 번복하는 현상을 번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성화보》에 入錄된 인물인 15세손 權季容은 《신사보》까지는 존재했다가 《갑인보》에서 탈락했고 《후갑인보》에 다시 入錄되었다. 이처럼 족보별로 인물이 탈락과 입록을 번복하는 것은 17세기 이후 이전보다 많은 인물들이 족보에 포함되고 있던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족보에 입록되는 인물들이 많아지면서 탈락하거나 이전에 탈락했을지라도 다시 입록할 수 있는 인물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표 2>에서 간행본별로 유지율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사보》와 《후갑인보》의 경우가 다른 족보에 비해 유지율에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신사보》는 그 다음 간행본인

《갑인보》와 30년의 차이가 나지만 입록 인물들의 90% 정도만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약 두 배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 《갑인보》와 《후갑인보》 사이의 유지율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후갑인보》도 그 직후 간행본에서 인물 유지율이 90%가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간행본에 따라 상이한 입록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기로 한다. 실제로 한 간행본은 다른 간행본과 다른 입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표 1>에서 《갑오보》의 권질이 다른 족보보다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갑오보》가 부계 자손 가운데에서도 남성 자손만을 한정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족보 인물 기재 방침이 특징적으로 드러난 것은 《갑오보》뿐이나, 간행본 별로 간행 인물이 바뀜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시간이라는 변수 또한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후갑인보》와 《정미보》 사이에는 1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으므로 해당 인물의 세계를 더 이상 고증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조선 후기 사족은 자손 수의 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한 군데에 모여 사는 데에 한계를 겪고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었다.³⁰⁾ 이 같은 현실은 족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족보에는 지역을 써 두는데, 다양한 지역에 안동권씨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주하는 인물들이 많아지면서 안동권씨로 자신의 성관을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가계를 고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들이 생겨날 가능성 또한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족보만으로 간행본별 성격 또는 원칙을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 단계에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물의 탈락과 입록을 번복하는 인물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까닭에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족보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료가 아니었고 당시의 기준에 따라 인물들을 포함하고 배제하는 과정을 거친 자료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표 2>에서 탈락하는 인물들은 이 같은 과정에서 족보 입록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別譜로 移錄되었거나 아예 기재 자체가 되

30) 김정운, 2015 앞 논문.

지 않은 인물들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 2>에서 탈락한 인물들과 관련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각 족보의 범례이다. 《갑인보》 범례에는 “신사본 중 원보에 入錄 된 자로 혹 의심스러운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금본에서는 별보로 이 송하였다.”³¹⁾는 구절이 존재한다. 原譜에서 別譜로 인물들이 옮겨가면서 <표 2>에서 탈락으로 추산된 것이다. 실제로 原譜에 있던 인물이 別譜로 移錄되기도 했고 别譜에 있던 인물이 原譜로 移錄되기도 했다. 표면적으로 여기서 탈락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계통의 고증 가능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한미한 인물들을 수록해왔던 别譜였기에 사회적 위계가 한미한 인물이 原譜에서 탈락했다는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신사보》에서 《갑인보》, 《후갑인보》 사이의 탈락 인물과 관련하여서는 庶派 입록과 관련한 범례를 살펴볼 수 있다. 《성화보》는 범례가 없고 《갑오보》는 부계 남성 자손 중 적손만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달리 《신사보》 범례에는 처음으로 庶派 3대를 입록 토록 한 규정이 보인다. 실제로 《신사보》에는 이전 족보에서 서자라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인물들이 포함되고 있다. 일례로 20대손 權祚는 權憲의 서자로 신사보에 처음 기재된 인물이다. 형제이자 적손인 權祺가 《갑오보》에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3대였던 庶派 입록 범위는 바로 다음 간행본인 《갑인보》에서 당대로 축소된다. 《신사보》에서 《갑인보》 사이 탈락에는 이와 같은 서파 인물의 탈락이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후갑인보》에서 서파 입록 범위의 제한이 사라지는데 이는 <표 2>에서 《신사보》 유지율이 《후갑인보》에서 상승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실제로 20대 인물로 서자인 權鐵漢의 자손은 《신사보》에서 22대까지만 기재되어 있으나, 《갑인보》에는 자손이 기재되지 않았고 《후갑인보》와 《정미보》에서는 22대 이후 자손까지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족보 간행에 따라 가장 쉽게 입록 여부가 변동될 수 있는 인물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한미한 인물이거나 가문 내 지위가 한미한 인물인 서파

31) 《甲寅譜》 凡例 “辛巳本中入原譜者 或涉疑亂則 今本移送別譜”

였다. 안동권씨 족보에서 이들은 언제나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유지와 탈락을 수치로 표현한 <표 2>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기상 入錄될 수 있는데도 入錄되지 않다가 뒤늦게 入錄된 경우도 있다. 15세손 權尙延은 《신사보》에 처음 入錄된 인물이다. 그의 손자인 17세손 權稱이 1430년에 태어났으므로 《성화보》를 간행할 당시에 入錄 가능한 인물이었다. 형제인 權可均이 《성화보》와 《갑오보》 모두에 入錄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족보에는 부계 남성 자손만이 입록된 것이 아니었다. 《갑오보》의 경우를 제외하고 안동권씨 족보에는 외손이 수록되고 있었다. <표 1>에서 13권에 달하던 《을사보》 이후 1권으로 《갑오보》가 간행되고 다시 13권으로 《신사보》가 간행된 데에는 외손의 수록이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다. 《신사보》를 기점으로 외손 수록 범위의 변화가 생겨난 것이다.

2. 외손 기재 범위의 변화와 족보 자료의 성격

《성화보》는 외손 수록 범위에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權幸의 후손을 수록한 안동권씨 족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친손의 비율은 9.5%로 10%를 넘지 않았다.³²⁾ 현전하지 않지만 다른 간행본의 범례를 통해 살펴보건데, 《을사보》 역시 성화보와 동일한 내외손 수록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³⁾

조선 전기 외손은 족보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었고 족보 간행에도 참여하였다. 《성화보》의 간행에는 외손인 徐居正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 외에도 서문과 발문에서 《성화보》 간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인물로 언급되는 이들 가운데 안동권씨는 확인할 수 없다. 아쉽게도 족보 자체만

32) 권영대, 1981 〈성화보고〉, 《학술원논문집》 제 20집.

33) 《辛巳譜》 〈凡例〉 “達城及乙巳譜並錄內外孫今繼 而修正 則 卷帙 浩穰 工役煩重 外孫則 限曾孫入錄凡十三卷”

으로 족보 간행에 참여한 인물 전체를 밝히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한 유사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분석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序·跋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족보 간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족보 간행의 필요성과 간행 경위를 설명하는 序文과 跋文 처음으로 족보 간행을 주창하고 주도적으로 간행 사업을 이끈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손 기재 범위에 제한이 없던 《성화보》에서는 안동 권씨보다 외손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조선 전기 족보의 외손 가계의 기재는 혈연관계를 통해 이권의 상속과 이 상속에서 외손 가계를 통한 상속이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왔다.³⁴⁾ 이에 따르면 족보의 입록은 사회적 이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혈연관계의 범위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 전기 사회에서부터 외가는 경제적 이권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지위의 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이었다. 어머니로부터 전래되는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에는 외가의 정보를 포함한 四祖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³⁵⁾

족보 간행은 재화, 인적 네트워크, 족보 지식 등이 필요한 복잡한 일이었다. 이에 15-16세기 족보는 중앙 명문 거족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³⁶⁾ 《文化柳氏嘉靖譜》와 《성화보》의 입록 인물 가운데 과거 급제자의 수는 2000명이 넘고 이 수치는 명종말까지 과거 급제자 수의 60%에 해당한다는 기준의 분석결과³⁷⁾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15-16세기 족보가 내외손 모두를 제한 없이 수용하였던 것은 족보를 간행하는 인물들이 중앙 명문거족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명문거족으로서의 혈연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차지하는 인물들도 제한적이었

34) 이정란, 2008 앞 논문.

35) 대표적으로 과거 응시를 들 수 있다. 《經國大典》, 〈禮典〉, 諸科條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 혹은 그 후손의 과거 응시가 제한되고 있다. 과거 응시를 위해서는 응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四祖 정보의 제공이 필요했다.

36) 권기석, 2010b 앞 논문.

37) 에드워드 와그너, 2007 앞의 책, 241-242쪽.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족보 편찬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안동 권씨 족보 가운데 《갑오보》에서 외손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 다음 간행본인 《신사보》에서 외손은 다시 입록되었으나 그 범위에 제한이 생겼다. 《신사보》에서 외손은 증손 즉 3대만을 기재하도록 정해졌고 이후 《갑인보》에서 2대에 해당하는 인물만을 입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외손 기재 범위 제한에는 족보 권질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뒷받침 되었다. 17세기 족보에 포함되는 인물의 범위가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 인물의 후손을 망라하는 족보 자료의 특성상 족보 권질의 증가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족보 권질의 증가는 족보 간행에 드는 공력의 증가로 이어졌다. 안동권씨족보 가운데에서도 17세기 중반 《갑오보》부터 권질 확대에 대한 우려가 범례³⁸⁾에서 관찰된다.

17세기 후반 이후 족보는 조선 사회 전반에서 간행 건수가 증가하였다. 이전에는 족보를 간행하지 않았던 혹은 하지 못했던 성관들이 조선 후기 들어 족보 간행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족보를 간행하는 성관의 수가 적었으므로 족보에 입록되기 위해 외손 혹은 외손의 가계로 포함되었어야 했었던 인물이 다른 성관 족보에 부계 자손으로 입록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는 권질 확대라는 현실적 이해 관계와 맞물려 이 시기 족보에서 외손 기재 범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외손 기재 범위와 더불어 족보 간행에 외손이 참여하는 경우도 줄었다. 안동권씨족보 序·跋文에서는 《성화보》 이후로 《신사보》 발문을 부탁받은 ‘朴紳’을 제외하고 안동권씨가 아닌 인물이 족보 간행에 참여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없다. 표면적으로 외손은 족보 간행에서 점차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족보가 점차 동성 친족 집단을 위주로 변화해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외손 기재 범위의 변화가 생긴 《신사보》를 기점으로 입록 인물의 정보에 해당하는 傍註 내용이 풍부해지기 시작했다는

38) 『甲午譜』, 凡例 “舊譜板本藏在本府而盡失於壬辰之亂其印藏者亦未能保新譜大本俱錄內外派凡十六帙考者病其浩洋故只抽子姓彙成一卷而庶派則諸譜皆闕只存數譜卒難盡收今姑略此”(밑줄은 필자 강조)

것이다. 《성화보》와 《갑오보》에서 간략한 관직명 정도만 기재하던 인물들이 《신사보》에서 생출년, 묘소 위치 등을 추가로 기재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16대손 權厚는 《성화보》와 《갑오보》 모두 특별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지 않았지만, 《신사보》에서 관직과 묘소, 부인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신사보》 이후 족보에서도 이전에는 없던 정보들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가 보인다.

1701년이라는 간행 시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신사보》의 간행을 위한 작업은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신사보》부터 방주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은 17세기 후반 족보 입록 계층이 확대된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관료 혹은 명문거족을 중심으로 간행되던 족보는 庶派와 吏派, 한미한 양반까지 포함되기 시작했다. 족보 입록 계층이 확대되는 것은 동성친을 중심으로한 친족 집단의 결속이라는 이상과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족보 입록과 간행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전 시기 족보 간행은 중앙의 명문 거족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해당 족보에 포함되는 것이 중앙 명문 거족의 일원임을 의미했지만 족보 입록 계층이 확대됨에 따라 족보 입록은 이전보다 얻기 쉬운 기회가 되었다. 이는 족보 입록만으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족보 간행자들은 이전보다 많은 인물을 족보에 포함했지만 이와 동시에 족보 입록 인물들 간 차이를 드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別譜의 존재가 그것이고 傍註에 기재하는 정보가 또 다른 하나이다.

안동권씨족보에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인물은 있더라도 평민 혹은 상민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은 없다. 현실적으로 족보에 포함된 모든 인물이 사회적으로 높은 위계에 위치한 인물일 가능성은 없으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인물은 정보를 알 수 없는 인물이거나 혹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인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족보 입록자에게 가운데 관직, 자호, 생출년, 묘소 등의 내용을 기입하는 방주 정보는 개인의 사회적 위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

그런데 傍註 정보에 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사보》부터 처 정보를 기입하는 인물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는 《정미보》까지 지속된 현상이었다. 처 정보는 이전 족보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정보였다. 입록 인물의 인적사항이 아닌 처 정보가 개인의 집단 내 혹은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傍註 정보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경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당시 족보 처 정보 기재와 관련한 사회 인식을 엿보기 위해 蘇洵의 《族譜序》를 주목하였다.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족보는 중국 송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歐陽脩, 蘇洵이 편찬한 족보가 효시로 간주되어 왔다.³⁹⁾ 이중 蘇洵은 족보 편찬에 있어 상징적인 존재였다. 조선 후기 간행된 족보들의 서문은 蘇洵의 말을 인용하여 족보 편찬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安鼎福이 쓴 《安東權氏族譜序》(1783)⁴⁰⁾가 이를 보여준다. 이 서문은 안동권씨인 權益彥이 간행한 小譜⁴¹⁾에 쓰일 서문을 安鼎福이 부탁받아 쓴 것이다. 安鼎福은 해당 서문에서 蘇洵의 《族譜序》를 인용하여 족보 편찬의 뜻을 밝혔다.⁴²⁾ 그런데 蘇洵의 《族譜序》에는 처 정보 기재와 관련한 부분이 등장한다.

우리의 아버지부터 나의 고조에 이르기까지 벼슬함과 하지 않음, 누구에게 장가 들었는가, 몇 살 까지 살았는가, 어느 날에 죽었는가를 모두 쓰면서 다른 것을 쓰지 않음은 무엇인가 내가 나온 곳을 상세히 함이다. 43)

39) 宮嶋博士, 2012 앞 논문, 9쪽.

40) 《順庵集》18권, 〈安東權氏族譜序〉; 安鼎福은 해당 서문을 통해 媵戚 權益彥의 부탁을 받아 해당 서문을 작성하였음을 밝하고 있다. 安鼎福의 사위는 安東權氏樞密公派 30대손 權日身으로 추측하건데 사위를 통해 인척 관계를 형성한 것 같다. 權日身은 1742년에 태어난 인물이므로 安鼎福이 인척관계를 형성한 것은 적어도 1742년 이후의 일이고 1742년과 安鼎福의 卒年인 1791년 사이 계묘년은 1783년이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서문을 1783년에 쓴 것이라 추정하였다. 安鼎福의 생몰년을 통해서도 추측가능한데, 1723년은 1712년에 태어난 安鼎福이 12살이 되는 해이므로 서문을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1) 본고의 분석대상인 大同譜가 아닌 보다 작은 단위로 만들어진 족보로 추정된다.

42) 《順庵集》18권, 〈安東權氏族譜序〉

“昔老泉修蘇氏譜。始自高祖。爲之言曰。親盡則情盡。情盡則喜不慶憂不吊。喜不慶憂不吊則塗人也。”(밑줄은 필자 강조. 밑줄 친 부분이 『族譜序』의 일부이다.)

43) 《古文眞寶後集》卷 17 〈族譜序〉“自吾之父 以至吾之高祖 仕不仕 嫁某氏 享年幾

蘇洵은 ‘누구에게 장가들었는가’를 자신이 나온 곳을 상세히 하기 위함이라 밝혔다. 이런 인식은 조선에서 족보를 간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유되었던 것 같다. 다음은 朴世堂이 1683년 간행한 《潘南朴氏世譜》의 서문 중 일부이다.

벼슬하고 벼슬하지 않음, 누구에게 장가들었는가, 몇 살까지 살았는가, 어느 날에 죽었는가는 반드시 갖추어 적는 것은 蘇氏의 족보에서 택하여 좋은 것을 쓴 것이다. 나는 여기에 감응함이 있으나 明允이 親親에 박하여서 인하지 못한 것을 애석히 여긴다.
...44)

朴世堂은 蘇洵이 ‘親親에 박하였다’는 이유로 비판하였지만 蘇洵의 족보에서 벼슬을 기록하고, 장가든 곳을 기록하며 향년과 출년을 기록하는 것을 좋은 점이라 택하여 쓴다고 밝혔다. 조선 시대 족보의 전형이었던 蘇洵의 족보에서부터 17세기 후반 작성된 다른 족보들의 서문의 작성자들에게까지 일관적으로 처 정보 기재는 자신이 나온 곳을 상세히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족보에 입록된 인물에게 자신이 나온 곳을 상세히 하는 것은 족보 입록이 가지는 효용을 고려할 때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외손 기재에 제한이 없던 시기의 족보는 모변 혹은 부변을 통한 연관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 이권과 지위의 획득을 수월히 만들어주었다. 족보에 입록되는 인물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외손은 해당 성관에 속하는 어머니 와의 혈연 관계가 확실하므로 인물과 관련한 추가 서술은 필요하지 않았다. 조선 후기 동성친을 결집하는 족보는 관념적인 관계의 인물들을 한 집단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손 기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혈

某日卒 皆書 而它不書者 何也 詳吾之所自出也”

44) 朴世堂, 《西溪集》第 7卷, 〈潘南朴氏世譜序〉, “仕不仕。娶某氏。享年幾。某日卒必備書者。擇於蘇氏之譜而用其善者也。吾因是有感。而惜明允之薄於親親。爲未仁也。”

연적으로 연관성을 가졌던 인물들은 줄어들고 동성친이라는 범주가 족보 전체 인물을 포섭하는 기재가 되었다. 더하여 족보 입록 인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계만으로 모두의 출신을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 시기는 방주라는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하게 되었다. 이때 족보의 효시부터 출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처 정보가 선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처 정보가 처음부터 출신과 관련된 것이었을지라도 이는 사실 蘇洵 개인의 서술에 불과하다. 蘇洵의 주장이 조선 사회에서 납득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지속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데에는 조선 사회의 상황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처 정보가 개인의 출신과 어떠한 연관을 맺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二. 처 정보 기재율의 증가와 기재 내용

1. 처 정보 기재 인원의 증가 추세

안동권씨족보에서 처 정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701년 《신사보》부터이다. 내용과 형태의 변화는 있었지만, 처 정보는 1907년 《정미보》까지 지속적으로 기재되었다. 《신사보》와 《정미보》사이 처 정보 기재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처 정보 기재율로부터 그 논의를 시작하겠다.

<표 3> 각 족보별 쳐 정보 기재·미기재 인원수와 그 비율 (단위:명)

	신사보(1701)	갑인보(1734)	후갑인보(1794)	정미보(1907)
쳐 정보 기재 인원	739(10.6)	4726(45.1)	14842(67.7)	36959(76.1)
쳐 정보 미기재 인원	6240(89.4)	5746(54.9)	7095(32.3)	11618(23.9)
총 인원	6979(100.0)	10472(100.0)	21937(100.0)	48577(100.0)

*()안은 총 인원 대비 비율

<표 3>은 각 족보별로 쳐 정보를 기재한 인원과 기재하지 않은 인원을 각각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신사보》와 《갑인보》는 전체 인원 중 쳐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인원이 쳐 정보를 기재한 인원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이 역전되는 것은 1794년 간행된 《후갑인보》로 이후 족보인 《정미보》도 쳐 정보 기재 인원이 미기재 인원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쳐 정보 기재율⁴⁵⁾이 《신사보》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린 결과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새로 入錄된 인물들 가운데에서 쳐 정보를 기재하는 인물들이 생긴 것이라면 쳐 정보 기재율의 상승은 족보 入錄 부계 남성 자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 된다.

새로 入錄된 인물들 가운데에서 쳐 정보 기재가 이루어졌다면 쳐 정보 기재율은 가장 많은 인물이 추가된 시기에 가장 급격히 상승할 것이다. 쳐 정보 기재율이 《신사보》와 《갑인보》 사이에서 가장 급격하게 올랐던 것과는 달리 가장 많은 인물이 새로 추가된 구간은 《후갑인보》와 《정미보》 사이 구간이다. 이에 따르면 쳐 정보 기재는 새로 入錄되는 인물[신입인물]들 가운데에서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 이전 족보에 이미 入錄되어 있던 인물[이입인물]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13세손 權溥는 《성화보》와 《갑오보》에도 입록된 인물이지만 《신사보》에서 쳐 정보를 획득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신사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사보》 쳐 정보 인물

45) 쳐 정보 기재율(%)= (쳐 정보 기재 인원)/(총 인원)*100

가운데 이입 인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족보별 이입 인물과 신입 인물의 처 정보 기재 현황 분석
(단위: 명)

		신사보 (1701)	갑인보 (1734)	후갑인보 (1794)	정미보 (1907)
이입 인물	처 정보 기재	547 (20.5)	3381 (53.1)	6639 (64.2)	12109 (67.8)
	처 정보 미기재	2123 (79.5)	2989 (46.9)	3706 (35.8)	5751 (32.2)
	합계	2670 (100.0)	6370 (100.0)	10345 (100.0)	17860 (100.0)
신입 인물	처 정보 기재	192 (4.5)	1345 (32.8)	8203 (70.8)	24850 (80.9)
	처 정보 미기재	4117 (95.5)	2757 (67.2)	3389 (29.2)	5867 (19.1)
	합계	4309 (100.0)	4102 (100.0)	11592 (100.0)	30717 (100.0)

*() 안은 비율(%)

이미 入錄되어 있던 인물과 새로 入錄된 인물의 처 정보 기재율을 구체적 수치로 비교한 표가 <표 4>이다. 《갑인보》까지 이입 인물의 처 정보 기재율이 신입 인물의 처 정보 기재율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에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처 정보가 처음 기재되기 시작한 18세기 초에는 이미 기재되어 있던 인물들의 정보가 새로 기재되는 인물의 처 정보보다 중요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전 단계에 새로 기재된 인물이 혼인하지 하지 않은 상태였다가 그 다음 족보를 간행할 때에는 혼인하여 이입 인물의 처 정보 기재 현상으로 관찰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처 정보 기재는 초기부터 신입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입 인물의 처 정보 기재는 신입 인물에

게 현실적인 이유로 기재되지 못한 정보를 보충한 것에 가깝다. 예를 들어 27세손 權輶은 《신사보》에 처음 입록된 인물로 《갑인보》에서 처음으로 처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權輶은 1689년에 태어난 인물이므로 《신사보》 간행 당시에는 12세로 혼인을 하기 어린 나이라 현실적으로 처 정보를 기재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갑인보》에서 해당 인물이 획득한 처 정보는 두 족보 간행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갑오보》와 《신사보》 사이는 약 50년, 《신사보》와 《갑인보》 사이는 약 30년 정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다. 해석을 검증하기 위해 각 족보의 인물이 처음 처 정보를 획득하는 시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5> 족보에서 처음 入錄된 인물이 처음 처 정보를 획득하는 시기
(단위: 명)

간행본별 신입 인물		성화보	갑오보	신사보	갑인보	후갑인보	정미보
간행본	신입 인물						
성화보 (1467)	540	0	0	156 (28.9)	62 (11.5)	17 (3.1)	8 (1.5)
갑오보 (1654)	2319		0	391 (16.9)	748 (32.3)	163 (7.0)	58 (2.5)
신사보 (1701)	4309			192 (4.5)	1,861 (43.4)	471 (10.9)	101 (2.3)
갑인보 (1734)	4102				1,345 (32.8)	1,328 (32.4)	131 (3.2)
후갑인 보 (1794)	11592					8,203 (70.8)	801 (6.9)
정미보 (1907)	30717						24,850 (80.9)

*()는 처음 入錄된 인물 수를 기준으로 한 비율.

<표 5>는 각 족보별로 새로 기입된 인물이 족보를 거듭하면서 처 정

보를 획득하는 양상을 나타낸 표이다. 이에 따르면 《성화보》에 入錄된 540인 중 28.9%에 해당하는 156명이 《신사보》에서 처음 처 정보를 획득하였다. 540명 중 11.5%에 해당하는 62명은 《갑인보》에서 처음 처 정보를 기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성화보》에 기재된 인물이 가장 많이 처 정보를 획득하는 시기는 《신사보》가 된다.

만약 이입 인물의 처 정보 획득이 이전 시기 미혼 신입 인물의 처 정보 획득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갑오보》의 인물이 가장 많이 처 정보를 기입한 시기는 《신사보》가 되어야한다. 또 《신사보》의 신입 인물이 《신사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처 정보를 획득하는 시기는 《갑인보》여야 한다. 《갑오보》신입 인물이 가장 처 정보를 많이 기재한 족보는 《갑인보》이다. 《신사보》에서 약 16.9%의 인물이 처 정보를 기재했다면 《갑인보》에서는 《갑오보》신입 인물의 31.7%가 처 정보를 기재한 것이다. 《갑오보》와 《갑인보》사이에는 약 80년의 시간적 격차가 있다. 초혼 연령을 고려할 때, 족보 入錄 인물이 50년 동안 결혼하지 않다가 50년을 넘겨서 결혼하는 것은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⁴⁶⁾ 그렇다면 《신사보》의 처 정보 기재는 이전 족보의 미혼 신입 인물에게 처 정보 기재된 결과로 해석할 수 없다.

《신사보》의 신입 인물들은 《갑인보》에서 가장 많이 처 정보를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신사보》의 미혼 신입 인물이 혼인한 결과가 《갑인보》의 이입 인물의 처 기재율로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미혼 신입 인물’은 신입 인물이 족보 간행 당시의 인물이라는 전제를 통해 성립하는 말이다. 그러나 신입 인물은 족보 간행 당시와 면 시간적 격차를 둔 인물도 해당될 수 있었다. 앞서 제시한 15세손 權尙延의 사례가 이에 대한 예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입 인물의 처 정보 기재가 이전 족보의 미혼 신입 인물의 혼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2 번째 해석은 《갑인보》에서도 완벽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

46) 김건태의 분석에 따르면 18세기 단성 지역 남성의 초혼 연령은 18세 정도였다. 단성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이 시기 남성의 초혼 연령이 이로부터 10년 이상 차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태, 2004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1, 195-223쪽.)

에 처 정보가 처음 기재되기 시작한 18세기 초에는 이미 기재되어 있던 인물들의 정보가 새로 기재되는 인물의 처 정보보다 중요했다는 첫 번째 분석만이 가능한 것이다.

신입 인물이 족보 간행 당시의 인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입 인물에게 이루어지는 처 정보 기재는 ‘당대의 혼인 관계’ 구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인물이 생줄을 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입 인물의 연대분석은 어려움을 가진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이입 인물은 간행 당시보다는 앞선 시기의 인물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 <표 5>에서 이입 인물의 처 정보 기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간행 시기보다 앞선 시기의 인물들에게 처 정보가 보충되고 있는 것이다.

이입 인물에게 처 정보 기재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오랜 시간 격차를 두고 발생하는 일이기도 한다. 일례로 복야공파 17대 인물인 權恢는 《성화보》에 入錄된 인물이다. 이 인물은 족보를 거듭하면서도 탈락 없이 유지되었지만 처 정보를 기재한 것은 《정미보》가 처음이다. 족보 入錄과 처 정보 기재 사이에 400년 이상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처 정보는 오래 전의 인물이라도 기재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은 정보였던 것이다. 이전 인물들 특허나 간행 시기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인물들은 현실적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족보 간행자들은 이들의 정보를 족보를 거듭하며 추가했다.

종합하자면 17세기 후반부터 처 정보 수요가 생겨났고 이때의 처 정보는 간행 당시의 인물들만이 아닌 간행 이전에 존재했던 인물들의 처 정보까지 포함한 것이었다. 특히나 처 정보 기재율이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18세기 초반에는 간행 당시의 인물보다 이전의 인물들의 처 정보 기재에 주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입 인물에게 처 정보 기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처 정보 기재 초기 이입 인물에게 처 정보가 기재되는 현상과 이입 인물이 지속적으로 처 정보를 획득하는 현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처 정보 기재는 개인의 계통 증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다. 이입 인물은 이전부터 유지되어오던 인물이다. 간행자의 의도 속에서 이입 인물은 유지될 만한 인물이었고 이들로부터 이어지는 친족 관계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해당 인물의 유지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었을 것이다. 계통 증명에서 처 정보는 기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졌거나, 그 정보 내용이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계통 증명과 처 정보 기재가 가지는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처 정보 기재 내용을 살펴볼 차례이다.

2. 처 정보 기재 내용과 처 정보 제공의 목적

처 정보 기재는 1701년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재율이 높아졌다. 여기서 높아지는 기재율은 이미 入錄되어 있던 인물의 처 정보 기재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 시기 처 정보 기재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처 정보 내용과 그 정보의 변화 양상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표 6> 각 족보별 처 정보 기재 방식

	처 지칭 방식	前後 구분	자녀기록
신사보 (1701)	室, 夫人, 配, 壻	구분	生, 無後
갑인보 (1734)	室, 夫人, 配	구분	生, 有, 無後
후갑인보 (1794)	室, 夫人, 配	구분하지 않음	生, 有, 無後, 無育
정미보 (1907)	夫人, 配, 妻	구분하지 않음	生, 有, 無育

족보를 간행자들은 다양한 처 정보 지칭 방식을 활용하였다. 실제로 ‘室’, ‘配’, ‘夫人’ 등 한 족보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壻’은 《신사보》에서만 사용된 표현으로 18대 인물인 權畏

와 19대 인물인 權曉 두 인물만이 ‘壻’를 사용하였다. 壻’는 ‘室’, ‘配’, ‘夫人’ 와 달리 처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다. 해당 정보를 기재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의 사위에 해당하는지가 정보의 주된 내용이다. 그럼에도 해당 정보를 통해 처의 아버지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처 정보와 동일한 성격의 정보로 해석하였다.

처 지칭 방식은 한 족보 내에서 통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인물이라도 족보에 따라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다. 앞서 ‘壻’를 처 지칭 표현으로 사용한 權曉는 《갑인보》에서는 ‘室’을 《후갑인보》와 《정미보》에서는 ‘配’을 사용하였다. 16대 인물 權厚는 《신사보》에서는 ‘室’ , 《갑인보》에서는 ‘夫人’을 《후갑인보》와 《정미보》에서는 配를 사용하여 처를 지칭하고 있다. 이는 후기에 간행된 족보일수록 ‘配’로 처 지칭 방식을 통일하려는 시도 속에서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정미보》까지도 다양한 지칭 방식이 혼용되고 있지만 처 정보 기재 인물의 95.3%에 달하는 인물이 ‘配’로 처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 이는 ‘夫人’이 3.8% ‘室’이 0.1% 미만인것과 비교하였을 때 확연한 수치이다.

각 족보별로도 주로 사용하는 처 지칭 방식이 있었다. 《신사보》의 경우 ‘室’이 가장 많이 사용된 지칭 방식으로 전체 처 정보 기재 인물들 가운데 88.3%가 활용한 표현이었다. 《갑인보》에서도 ‘室’을 93.7%가 사용하였다. 《후갑인보》에서는 7.9%로 ‘室’의 사용 비율은 줄었지만 ‘配’가 88%의 비율로 그 사용 비율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처 지칭 방식을 통시적인 기준으로 삼아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처를 지칭하는 주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까닭은 무엇일까. 후기로 갈수록 ‘配’의 활용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과 ‘室’이 《정미보》에서 이전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 사용되는 현상은 범례를 통해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일. 이파로 본계에 연결되어 있는 자는 구보에 따라 원보에
入錄하고 吏派 두 자를 삭제한다. 室은 配자로 고쳐 돈후한 뜻

을 보인다. 47)

해당 범례를 작성한 인물은 별보에 入錄된 인물에게 쓰여왔던 ‘室’을 ‘配’로 고쳐 기재하도록 하였다. 吏派를 기재했던 別譜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室’이 없어지는 현상이 더불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 지칭 방식을 일관된 기준으로 채택하여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는 없지만, 간행 당시에 지칭 방식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724년 간행된 광주이씨 족보의 범례에서 처 지칭 방식의 등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한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광주이씨는 당상 이상의 처를 夫人으로 관직이 있는 인물의 배우자를 配로, 士人의 배우자를 室로 在世人은 嫁로 표시하였다고 한다.⁴⁸⁾ 안동권씨족보 범례 가운데에는 처 지칭 표현과 관련한 내용은 상기의 《정미보》범례가 전부이나, 약간의 경향성은 존재한다. 후기로 갈수록 配로 처 지칭 방식이 통일 되고 夫人은 작호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약간의 경향성으로 이를 통한 계층화 시도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 전기 족보에서 前室과 後室 구분은 딸을 통해 이어지는 ‘혈연’의 계승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딸이 前室인지 後室인지 밝힘으로써 딸의 소생을 밝히고 혈연관계를 통해 전승되는 사회경제적 혜택의 계승 대상을 확실히 한 것⁴⁹⁾이다. 다시 말하여 前室과 後室의 구분은 혈연관계의 확인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기재 방식이었다. 여기서 처 기재에서도 前室과 後室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1701년 아내를 기재하면서 前室과 後室을 구분하는 인물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신사보》에서

47) 《정미보》, 1907 「凡例」 . “一. 吏派連系者 依舊 入於原譜 而刪去 吏派二字 室字 政以配字 以示敦厚之意”

48) 권기석, 2010b 앞 논문, 147쪽.

49) 이정란, 2008 〈기획논문 : 여말선초 족보와 사회상 ; 족보의 자녀 수록방식을 통해서 본 여말선초 족보의 편찬 배경 -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25, 117-155쪽.

前室과 後室을 표기하는 방법은 後室만을 적시하거나, 前室과 後室 모두를 적시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 《신사보》 족보 상에서 두 번 이상 혼인을 한 인물 가운데 前室 혹은 後室 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인물은 없었다.

《신사보》에 기재된 처의 前·後室 여부만이 아니라 처가 後室의 소생임을 밝힌 인물도 있다. 22대 인물 爰慥의 아내는 世經이라는 인물의 後室 소생이다. 한 인물에 국한된 사례이고 그 이후 족보에서는 이 인물의 ‘后室女’라는 언급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前室, 後室의 구분이 《신사보》에서는 처의 어머니를 분별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前室과 後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족보에서 사라져갔다. 《신사보》에서 前室과 後室 여부를 구분했던 인물의 대다수가 《갑인보》에서는 前室과 後室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신사보》에서 前室과 後室 여부를 구분했던 인물 중 21대 權德操만이 《갑인보》에서 前室·後室을 구분하여 적시하고 있다. 《갑인보》에서 前室·後室을 구분하는 것이 이 한 사례만은 아니었다. 새로 入錄된 인물들이 前室·後室을 구분하여 적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 2번 이상 혼인한 인물들은 前室·後室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前室·後室을 구분하는 경향은 《갑인보》에서 줄어들었고 《후갑인보》에서 사라진다. 특징적인 것은 《후갑인보》에서는 딸의 前室·後室 구분도 같이 사라진다는 점⁵⁰⁾이다. 조선 전기부터 족보 상에서 존재해온 前室·後室의 명칭상 구분이 《후갑인보》가 간행된 1794년, 즉 18세기 후반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딸에게 前·後室 구분은 혈연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처 어머니의 전·후실 여부를 밝혔던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처 정보 상에 전·후실 여부를 기록하는 것도 혈연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초기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갑인보》에서는 혈연관계를

50) 權奇奭, 2019 〈조선시대 족보의 女性 등재 방식 변화 -여성의 夫家 귀속과 다원적 계보의 식의 축소-〉, 《조선시대사학보》 90, 65-68쪽.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처의 前·後室 여부를 구분하는 경향이 사라진 것은 어머니로부터 이어지는 혈연의 강조가 이권의 상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진 현상의 반영이라는 가정이 가능할 것 같다. 실제로 상속관행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17세기 이후 재산 상속에서 균분상속 관행이 존재하던 이전에 비해 여성의 상속분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여 어머니로부터 전래되는 이권이 이전에 비하여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⁵¹⁾ 더하여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아내의 재산 귀속이 아내의 혈통이 아닌 義子女에게 상속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었다.⁵²⁾ 이권이 상속되는 혈연에 관한 관념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 혈연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 정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족보 방주에 등장하는 자녀의 수는 부계 남성의 자녀 수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내로부터 얻은 자녀의 수를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2명 이상의 아내를 기재한 남성의 경우 각 아내에게서 얻은 자녀를 따로 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사보》에서 17세손 權審은 아내 尹씨로부터 아들 하나, 柳씨로부터 아들 하나, 딸 넷을 얻었다고 기입하고 있다. 그렇기에 자녀 기록의 변화 양상은 처 정보의 변화 양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자녀 표기 방식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로, 生(有)○子○女의 형태로 제시되는 정보이다. 두 번째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를 표시하는 것으로 無後(育)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족보를 간행을 거치면서 표기 방식이 추가되거나, 대체되는 변화를 경험했다. 첫 번째 경우 《신사보》에서는 生○子○女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生을 이용하여 자녀의 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정미보》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갑인보》부터 ‘生(낳다)’ 대신 ‘有(있다)’를 사용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갑인보》에서 ‘生’ 대신 ‘有’를 사용하는 경우는 28세손 權纘 한 명

51) 문숙자, 앞 논문, 117-149쪽.

52) 문숙자, 1994 〈〈朝鮮前期 無子女亡妻財產의 相續을 둘러싼 訴訟事例〉〉, 《古文書研究》 5.

이지만, 《후갑인보》에는 그 경우가 늘어났고 《정미보》에서도 ‘生’과 ‘有’ 둘 다 사용되었다.

자녀가 없는 경우를 표시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신사보》와 《갑인보》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는 ‘無後’로 표시하였다. 《후갑인보》에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를 ‘無育’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후갑인보》에서는 ‘無後’ 표현이 소수가 되어 24세손 權博, 25세손 權是得, 權震達만이 이를 사용하는 사용하고 있다. ‘無後(후사가 없음)’은 《정미보》에서 완전히 사라져 ‘無育(양육한 이가 없음)’으로 대체되었다.

‘낳음’에서 ‘있음’으로, ‘후사’에서 ‘양육’으로 자녀 수를 표기하는 방식은 변하고 있었다. 특히나 자녀가 없는 경우 그 방식의 변화는 뚜렷했다.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후갑인보》 간행 당시에 자녀는 낳지 않아도 있을 수 있고 나의 후사는 아니어도 양육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이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前室과 後室의 구분이 비슷한 시기에 사라지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자면 18세기 후반 ‘아내가 누구를 낳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처 정보 기재 정보 현황 (단위: 명)

	성씨	본관	아버지	자녀	생졸
신사보 (1701)	195 (26.4)	545 (74.7)	719 (97.3)	74 (10.0)	8 (1.1)
갑인보 (1734)	360 (7.6)	4,365 (92.3)	4,511 (95.5)	330 (7.0)	2 (0.0)
후갑인보 (1794)	302 (2.0)	14,530 (97.9)	13,271 (89.4)	591 (4.0)	2 (0.0)
정미보 (1907)	278 (0.8)	36,669 (99.2)	30,973 (83.8)	399 (1.1)	19,717 (53.4)

*()안은 처 정보 기재 인물 중 해당 정보를 기재한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처 정보 기재 내용을 구체적 수치로 나타낸 <표 7>에서는 처 정보를 통해 자녀 정보를 제시하는 비율이 족보를 거듭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 정보 제공에는 소생 자녀 분별의 목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녀 정보를 가장 많이 제시한 《신사보》에서도 그 비율이 약 10%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같은 시기 아버지 정보가 98%에 해당하는 인물에게 기재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같은 수치라면 처 정보의 제공이 애초부터 자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여기서 자녀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生(有)○子○女의 방식으로 소생을 완벽히 분별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 같지 않다. 이는 이 ○子○女에 해당하는 부분이 족보를 거듭하면서 바뀌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1세손 權德輿의 부인 李씨는 《신사보》에서 두 딸을 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갑인보》에서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둔 것으로 나온다. 權德輿가 1518년 출생한 인물이므로 추가된 아들 한 명은 《신사보》와 《갑인보》사이에 새로 태어난 자식이라기 보다는 《신사보》에서 누락되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족보가 모든 인물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 정보 자체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처 정보를 통해 제공되는 자식의 정보만으로 처의 소생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다면 처 정보 기재는 처음부터 자녀와 관련한 정보 제공에 목적을 두지 않았을뿐더러 18세기 어머니와 자녀 관계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더욱 자녀 정보 제공 의도와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처 정보 제공의 내용은 크게 <표 7>에서 제시한 4가지로 분류된다. 이 외에 정려 사실, 효행 등을 더불어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성씨의 경우 성씨만이 제공되거나, 아버지 이름으로 제공된다. 본관은 관향과 성씨가 합쳐진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며 아버지 정보는 아버지의 이름, 관직, 추증 사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성씨 정보는 본관과는 달리 본관의 정보를 제외한 성만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19대 인물 權衡의 부인은 《갑인보》에서 처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데 楊氏와 李氏라는 성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본관을 확인할 수 없다. 성만을 단독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관 정보가 없이 아버지 이름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제시되기도 한다. 27대 인물 權壽垕의 아내는 전처가 金聖咸의 딸, 후처가 李汝樑의 딸로 아버지의 이름과 성씨는 알 수 있지만 본관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경우도 성씨 자체는 확인 가능하므로 성씨를 산출하는 통계에 포함하였다. 성씨만을 기재하는 경우는 처 정보 기재 전체의 경우에서 적은 비율만을 차지하고 후기로 갈수록 그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처의 성씨만을 기재하였던 인물이 후기로 가면서 본관까지 갖추어 적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權克經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26세손 權克經의 처는 《갑인보》에서는 성씨만을 기재하였지만 《후갑인보》부터는 본관까지 기재하고 있다.

<표 7>을 통해 분석해본 바, 가장 많이 기재된 정보가 본관과 아버지 정보라는 점은 처 정보 제공 목적의 단초를 제공해준다. 다른 정보와는 달리 본관과 아버지 정보는 항상 70% 이상을 유지하며 기재되어왔다. 처 정보 기재의 목적이 본관과 아버지 정보 제공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본관 정보를 기입하는 인물은 후기로 갈수록 점차 늘어가는 반면, 아버지 정보를 기입하는 인물은 그 비율이 점차 줄어가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정보가 없이 본관만을 기재하는 인물이 늘어가는 정황을 보여준다. <표 8>의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본관만을 기재하는 인물들이 1.8%에서 15.8%로 증가한 반면, 아버지 정보만을 적는 인물들은 25.3%에서 0.4%로 하락한 것이다. 개인의 정보 기재가 사회적 위계를 확인받는 과정에 하나라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본관 정보만이라도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기재하는 인물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성씨, 본관, 아버지 정보 현황 (단위: 명)

		신사보	갑인보	후갑인보	정미보
처 정보 미기재(A)		6240	5746	7095	11618
처 정보 기재	성씨만	4(0.5)	29(0.6)	136(0.9)	121(0.3)
	본관만	13(1.8)	179(3.8)	1,426(9.6)	5862(15.8)
	아버지 만	187(25.3)	334(7.1)	167(1.1)	166(0.4)
	본관+아 버지	532(72)	4,179(88.4)	13104(88.3)	30807(83.4)
	이 외 정보	3(0.4)	5(0.1)	9(0.1)	39(0.1)
	소계(B)	739	4726	14842	36959
합계(A+B)		6979	10472	21937	48577

*() 안은 전체 처 정보 인물 가운데 해당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

그럼에도 본관과 아버지 정보 기재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표 8>은 본관과 아버지 정보를 모두 쓴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선 19대 인물 權衡과 같이 아내의 성씨만을 알 수 있는 경우, 《신사보》에 기재된 18대 인물 權弼臣의 처 ‘驪興閔氏’와 같이 본관 정보만을 기재한 경우, 22대 인물 權暉이 《신사보》에서 ‘室參議趙穆女’의 형태로 기재한 바와 같이 본관 정보 없이 아버지 정보만을 단독 기재한 경우는 전체 처 정보 기재 인물 가운데 30%도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10% 미만에 해당한다. 《신사보》에서 17대 인물 權紹의 처 정보로 ‘室陽川許璡女’가 제시된 것과 같이 본관과 아버지 정보 모두를 갖추어 쓰는 것은 족보상 처 정보 기재의 이상적 형태였던 것 같다. 앞선 족보에서 본관만, 혹은 아버지 정보만을 기재한 인물이 다음 족보를 통해 정보를 추가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갑인보》에서 본관만을 기재한 179명의 인물 중 48명이 《후갑인보》에서 아버지 정보를 추가하고 10명이 《정미보》에서 아버지 정보를 추가하였다. 23세손 權爲己는 《신사보》에는 처 정보가 없었다. 《갑인보》와 《후갑인보》에서는 처의 본관만을 기재했고 《정미보》에서 처음으로 본관과 아버지 정보를 기재했다.

權爲己가 1586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100년 넘게 지나서야 처의 본관을 추가했고 300년 넘게 지나서야 아버지 정보를 추가한 것이 된다.

이전 족보부터 계속 실린 인물에게 처 정보를 처음 기재하기도 했지만, 처 정보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도달한 정보의 형태가 ‘본관과 아버지 정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8>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본관과 아버지 정보 모두를 제공하는 것이 분석 시기 동안 일관되게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 정보 기재에서 본관과 아버지 정보의 제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처음 처 정보가 기재되었을 때의 정보로부터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신사보》에 기재되는 인물 가운데에는 아버지 정보 이외에도 曾祖, 外祖, 祖, 外祖母, 母, 때로는 관계를 헤아릴 수 없는 조상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중 24세손 權伯時의 처 丁씨는 丁熿 손녀로만 표시되어 있다. 여기서 아내가 속한 가계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고 아버지 정보의 제공은 그 방식의 한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사보》 이후 아내 정보에서 아버지 이외의 인물은 제시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갑인보》 20세손 權稟을 통해서 아내의 삼촌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삼촌이 退溪 李滉이고 삼촌이 묘지문을 작성해주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였다. 《신사보》 이후 처 정보에서 다른 가계의 인물들은 사라지고 아버지만 살아남은 것은 처의 가계 정보가 ‘아버지’ 정보로 축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처의 아버지 정보를 중심으로 한 가계 정보의 제공은 족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鄉案 入錄에서도 여성 정보가 중요해졌다. 1677년 작성된 《安東 鄉錄》 말미에 “또 정년에 취회에서 향로는 단지 삼참만으로 한정했다.”⁵³⁾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향안에 입록되는 인물을 三參으로 한정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三參은 父·母·妻의 계통을 의미⁵⁴⁾하는 말이다. 鄉案에 入錄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53) 《安東 鄉錄》 1677, “又於丁巳聚會鄉老只以三叅爲限”

54) 金陽烈, 《清休齋先生文集》, 〈鄉錄案改修序〉 “…斟酌時宜父母妻闕俱無瑕玷則謂之三參而直書之間或有未準於三則鄉人齊會而可否之圈準然後書之…”

그리고 아내의 계통이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향안입록기준은 사족으로 内外의 신분적 하자가 없는 자로 二參이 기본이었으나 의논이 필요했고 이 시기에는 이를 둘러싼 논쟁을 피하여 향안을 작성하기 위해 직서 가능한 三參으로 한정되었다.⁵⁵⁾ 향안 입록은 원칙적으로 어머니 정보의 제공이 필요했고 이후 처 정보의 제공까지 필요해진 것으로 개인의 계층을 구분하는데 있어 비부계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중시되었다.

여기서 1615년 안동부에서 작성한 《安東鄉校 鄉錄草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기적으로 정사년(1677)년에 작성된 향안보다 앞선 시기에 작성된 초안이지만 향안 입록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三參 중 처 정보와 아버지 정보가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三參 혹은 二參정보 제공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처 정보에 妻鄉과 妻父의 이름이 그 정보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안 입록에 필요한 여성 정보는 해당 여성의 본관과 아버지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7세기 전반부터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처 정보가 필요했고 그 형태가 처의 본관과 아버지 정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의 형태는 족보의 처 정보 기재 형태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기 개인과 관련한 많은 정보 가운데 처 정보가 중요성을 얻은 이유를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족보 편찬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 후기 사회는 유교적 이상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부계 남성 집단을 중심으로 한 결속을 이상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 경제적 이권에는 비부계적 요소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조선 후기까지 처가와 외가는 개인의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⁵⁶⁾ 더 나아가 상속 열위에 위치한 인물들에게 처가의 존재는 부계로부터 전래되는 사회적 이권의 부족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⁵⁷⁾ 족보를 간행하는 인물들에게 족보 속 처 정보는 비부계적인 관계, 여

55) 정진영, 2001 〈조선후기 향촌 양반사회의 지속성과 변화상 (2) - 안동 향안의 입록인물 검토〉, 《대동문화연구》38(0), 252-253쪽.

56) 한상우, 2014 〈朝鮮後期 兩班層의 親族 네트워크〉, 성균관대학교박사논문.

57) 김정운, 2015 앞 논문.

성을 통한 사회적 이권의 계승이 잔존하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사회적 이권 및 지위의 획득에서 필요한 정보였던 것이다.

맺음말

조선 시대 여성사는 사료의 한계로 조선 시대 남성의 시선을 경유한 여성 존재들을 다룰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사료적 한계 속에서 본 연구는 그들이 구성한 여성 정보가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에 친족 관계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족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족보에 여성 정보 기재 현상을 추적하였다.

17세기 후반 족보는 변화했다. 족보 간행자들은 더 많은 同姓 인물을 入錄시키는 대신, 외손 기재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향을 택했다. 이와 동시에 처 정보 기재 또한 시작되었다. 《신사보》에 처음 처 정보가 기재된 이후, 처 정보 기재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여기서 처 정보 기재율의 상승은 이미 기재된 인물의 처 정보 기재를 포함한 것이었다. 처 정보 기재 초기부터 이입 인물이 처 정보를 많이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족보를 거듭하면서 이입 인물의 처 정보가 추가되고 있었다. 간행 시기 보다 앞선 인물에게 처 정보가 기재되는 현상은 처 정보가 당대의 혼인 관계 구현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 가능하게 했다.

조선 후기에는 더 많은 인물들이 족보를 통해 증명되는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이익을 경험하고자 하였다. 족보 간행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계를 증명하고자 하였고 그 가운데 처 정보가 새로운 정보의 일환으로 채택되었다.

시론에 불과하지만,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생긴 족보의 변화는 양반이 마주했던 조선 후기의 현실로부터 비롯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조선 후기는 양반이 향촌 사회의 존재가 되는 시기이다. 양반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향촌의 존재 양반들은 자신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입증해야하는 필요성 속에 놓인 것이다. 더하여 과거제와의 연

관성도 생각할 수 있다. 17세기 이후 과거에 응시하는 인원은 증가했다.⁵⁸⁾ 여기서 과거 응시 자격에 현달한 四祖 정보의 제공이 필수적이었고 이는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원칙이었다. 과거 제도, 향촌 지배 질서와 양반, 그리고 여성 정보에 대한 수요를 연결 짓는 논의는 다양한 차원의 고찰과 추가 사료 검토를 요하는 작업이므로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한편으로 여성 존재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라보는 본 연구의 시선을 공유하며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조선 후기 여성의 정보는 지속적 수요 속에 놓였다. 족보 간행자들의 눈을 통해 본 그들의 정보는 비록 그들의 본관과 가계 정보에 불과했지만 확실한건 처 정보 기재 가능성 자체가 중요해지고 있었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양반이 妻의 정보까지 제공해야 했던 상황은 양반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재고하게 한다. 차별과 비차별의 이분법 위에서 양반 남성은 조선 후기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존재로 그려져왔다. 차별 혹은 이런 차별에서도 자신의 삶을 성취한 여성의 일면을 강조할수록 양반 남성은 공고한 하나의 집단이 되어 조선 여성의 삶을 부수고 억압하는 실체가 되었다. 양반 남성은 그들의 지배 질서 형성과 유지를 위해 여성을 억압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 남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여성 정보’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 여성은 가문 내의 존재로 기억하려는 의도의 근간에는 양반 남성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조선 사회의 양반으로 살아가는 남성은 그 자체로 완결될 수 없는, 여성의 정보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는 미완의 존재였던 것이다.

58) 박현순, 2014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참 고 문 헌

1. 자료

1) 족보

《成化譜》

《甲午譜》

《辛巳譜》

《甲寅譜》

《後甲寅譜》

《丁未譜》

2) 문집

《順庵集》

《古文眞寶後集》

《西溪集》

《清休齋先生文集》

3) 향안

《安東 鄉錄》(1677)

《安東鄉校 鄉錄草案》(1615)

4) 법전자료

《經國大典》

2. 연구 논저

1) 연구서

- 김연수, 2018 《전통흔례 제도사와 시집살이 문화의 탄생》, 민속원.
- 박현순, 2014 《조선 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 성씨이야기편찬실, 2014 《안동권씨이야기》, 올린피플스토리.
- 장병인, 1997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 崔在錫,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역, 2003 《한국의 유교화 과정: 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너머북스. (Deuchler, Martina.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Mass. :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를 번역).
- 마르티나 도이힐러, 김우영·문옥표 역, 2018 《조상의 눈 아래에서》, 너머북스.
- 마크 피터슨; 김혜정 역, 2000 《儒敎社會의 創出》, 일조각.
- 에드워드 와그너; 이훈상·손숙경 역, 2007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일조각.

2) 연구논문

- 권기석, 2007 <15~17세기 族譜의 編制 방식과 성격>, 《奎章閣》30.
- 권기석, 2010a <15~17세기 族譜 간행과 참여계층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권기석, 2010b <조선시대 족보(族譜)의 入錄계층(入錄階層) 확대와 한계 -> 《조선시대사학보》55.
- 권기석, 2011 <한국의 族譜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44.
- 권기석, 2019 <조선시대 족보의 女性 등재 방식 변화 -여성의 夫家 귀속과 다원적 계보의 식의 축소->, 《조선시대사학보》 90.

- 권기석, 2020 〈조선후기 족보 입록의 정치·사회적 의미 -족보가 갖는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의兩面性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사학보》 92.
- 권내현, 2018 〈17~19세기 조선의 재산 상속 관행—종법과 경제력 변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70.
- 권영대, 1981 〈성화보고〉, 《학술원논문집》 제 20집.
- 권오영, 2010 〈조선시대의 족보(族譜)기록에 보이는 유교이념(儒敎理念)의 양상과 의미〉, 《한국계보연구》 1.
- 김건태, 2004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1.
- 김건태, 2006 〈19세기 단성지역의 결혼관행〉, 《고문서연구》 28.
- 김경란, 2000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 김경미, 2006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친영례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5.
- 김경미, 2012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 《한국여성학》 28(4).
- 김남이, 2006 〈17세기 사대부의 『주자가례』에 대한인식과 일상에서의 예 실천〉, 《한국학》 29(2).
- 김소은, 2007 〈18세기 嶺南 士族의 일상과 생활의례(I)〉, 《史學研究》 88.
- 김언순, 2009 〈18세기 종법사회 형성과 사대부의 가정교화: 가훈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3.
- 김윤정, 2009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14.
- 김정운, 2015 〈조선 후기 사족의 혼인과 이주〉, 《한국사학보》 60.
- 김진명, 1994 〈가부장담론과 여성억압-내훈서 및 의례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33.
- 노명호, 1999 〈한국사 연구와 족보〉, 《한국사 시민강좌》 24.
- 문숙자, 1994 〈朝鮮前期 無子女亡妻財產의 相續을 둘러싼 訴訟事例〉,

《古文書研究》 5.

- 문숙자, 2019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국학연구》 39, 117-149쪽.
- 宮島博士, 2012 〈동아시아세계 속의 한국 족보〉, 《大東文化研究》 77.
- 박경, 2011 〈16세기 유교적 친족질서 정착 과정에서의 총부권 논의〉, 《朝鮮時代史學報》 59.
- 손병규, 2010 〈13~16세기 호적과 족보의 계보형태와 그 특성〉, 《大東文化研究》 71.
- 이건천, 2010 〈조선시대 족보에 대한 일 고찰〉, 《강원문화연구》 29, 59-83쪽.
- 이남희, 2011 〈조선 사회의 儒教化와 여성의 위상〉,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48.
- 이남희, 2011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를 통해 본 조선 초기 여성의 재가(再嫁)문제〉, 《조선시대사학보》 57.
- 이문주, 2010 〈『주자가례』의 조선 시행과정과 가례주석서에 대한 연구〉, 《유교문화연구》 1(16).
- 이수건, 1999 〈족보와 양반의식〉, 《한국사시민강좌》 24.
- 이순구, 1998 〈종법제도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한국사》 31.
- 이순구, 2005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회》 10.
- 이순구, 2015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 - 경주 양동마을을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23.
- 이숙인, 2005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 문화〉, 《한국학》 29(2).
- 이정란, 2008 〈기획논문 : 여말선초 족보와 사회상 ; 족보의 자녀 수록 방식을 통해서 본 여말선초 족보의 편찬 배경 -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를 중심으로 -〉, 《한국중세사연구》 25.
- 장병인, 2005 〈조선중기 혼인제의 실상 - 반친영(半親迎)의 실체와 그

- 수용여부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8.
- 정진영, 2001 〈조선후기 향촌 양반사회의 지속성과 변화상 (2) - 안동 향안의 입록인물 검토〉, 《대동문화연구》 38(0).
- 정진영, 2019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본 18세기 혼인풍 속〉, 《고문서연구》 54.
- 정해은, 2014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역사와 현실》 91.
- 崔在錫, 1972 〈朝鮮時代의 相續制에 關한 研究 - 分財記의 分析에 依한 接近〉, 《역사학보》 53·54.
- 崔在錫, 1979 〈朝鮮時代의 族譜와 同族組織〉, 《歷史學報》 81.
- 최홍기, 2004 〈친족제도의 유교화 과정〉,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19-91쪽.
- 하여주, 2017 〈17세기 조선 사회의 결혼형태 변화에 따른 젠더 계층화 시도와 갈등 양상〉, 《여성학연구》 27(3).
- 한상우, 2014 〈朝鮮後期 兩班層의 親族 네트워크〉, 성균관대학교 박사 논문.
- 한효정 2010 〈16세기 한 양반가 부인의 재산 축적과 소유의식〉, 《古文書研究》 36.

【Abstract】

Trend and Meaning of the Women's Information Registered on the Late Joseon Dynasty Genealogy

-Centering on Andong Kwon's Genealogy(1476~1907)-

Kang Na Eun

Department of Korea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aims at analyzing the phenomenon of registering wife's inform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genealogy. Genealogy[族譜], which started the early Joseon Dynasty, changed composition being widely published in the late Joseon period. While there is a restriction on registering daughter's children, a growing number of people provide wife's inform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By analyzing the increasing trend of the people enrolled wife's information and the

specific content of the information, this thesis sought the meaning of description of the wife.

Genealogy was actively published throughout the late Joseon dynasty, and people who could not be registered on the early genealogy begin to be listed in the genealogy. The main reason was the gathering of homogeneous groups. The same change has been made in Andong Kwon's genealogy. From 1476 to 1907, Andong Kwon published its genealogy seven times. Byeolbo [別譜: Separated genealogy], which included uncertain descendants, was made since the mid-seventeenth century.

Andong Kwon's genealogy broadened enrolled members toward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t the same time, a reversal of registration or the late-registration also existed.

Compared to the early Joseon Dynasty, much more clan printed their genealogy. And this enabled more people to be included in the genealogy. Simultaneously fewer people from the daughter's descendants were included, due to the limitation in the scope. The genealogy has reorganized to include more people from the homogeneous groups. Throughout the change, the possibility of guaranteeing social status has been lowered. As a result, enrolled people started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The 'wife's information' was one of the provided information.

The percentage of the people who have their wives' information gradually increased as the publication continues. wife's information was not only about the marriage at the time but also the lineage of the person. Provision of the wife's information was more significant for pre-registered people than the newly registered people at the initial phase. And wife's information of pre-registered members was continuously supplemented. And wife's information of pre-registered

members was continuously supplemented.

The majority of the people who offered the wife's information focused on providing information about the wife's choronym[本貫] and father, which correspond to the wife's lineage information. The wife's information, especially about the wife's lineage, was needed for those who tried to demonstrate their social rank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is could be related information in genealogy could be related to the social background in which maternal families and wife's families have an influence on individuals' social status and interests until the late Joseon Dynasty.

keywords : Late Joseon Dynasty, Genealogy, The Wife's information, Daughter's Descendant, Social Status, Lineage.

Student Number : 2018-28670